



의왕월암 A-1 및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및 A-3블록

■ 공급대상 : A-1블록 674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1세대 (전용면적 55㎡)

A-3블록 642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77세대 (전용면적 55㎡)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속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4.11.08.)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A-1BL 2024820014, A-3BL 2024820015)

알 려 드 립 니 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5.05.21.)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지속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의왕월암지구 A-1블록 674세대 중 446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28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의왕월암지구 A-3블록 642세대 중 424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18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5.22(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A-1BL 2025820004, A-3BL 2025820006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반드시 블록을 확인하신 후 단일 주택형(A-1BL : 055.00000, A-3BL : 055.0000S)으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A-1BL은 건축공사일정 상 마이너스율선행, 공간확장형 및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선택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월암 A-1 및 A-3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uw-a1a3.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uw-a1a3.co.kr) 및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가능합니다.

■ LH 동안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 동안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 단위세대는 의왕월암 A-1블록 55B타입, 의왕월암 A-3블록 55A1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5.25(일) 17시 이후 동안 주택전시관 견본주택의 운영이 종료**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구 분	방문일	주소	사이버 모델하우스	문의전화
일반 관람	2025.05.24(토)~05.25(일) (10:00 ~ 17:00)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번지	www.lhuw-a1a3.co.kr	031-8077-7989

■ 의왕월암지구 A-1 및 A-3블록 최초공고(2024.11.08.) 기 당첨자(본인 및 세대원) 및 부적격당첨자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 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 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의왕시 1년 이상(2024.05.22.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의왕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24.05.22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2) '24.05.22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 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세대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분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예비자)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계약체결	
					전자	현장
2025.05.22 (목)	2025.06.04(수) 10:00 ~ 06.05(목) 16:00	2025.06.13(금) (14:00 이후)	2025.06.21(토)~23(월) (10:00~17:00)	2025.09.23(화)~24(수) (10:00~17:00)	2025.09.29(월) (10:00~16:00)	2025.09.30(화) (10:00~17: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수원 주택전시관	LH 청약플러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수원 주택전시관

* 당첨자(예비자)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수원 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1149)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5.09.29(월)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 수원 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1149)에 'VI.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선택사항품목 결정,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대상 인지세 납부세액 15만원(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청약월임 A-1 및 A-3블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개요 : 연 1.3% 고정금리(2021.10.15. 공고한 사전청약한 단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차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금융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금융(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담보인정비율 70%			담보인정비율 6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5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4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차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청약월임지구 A-1 및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금융 용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 수도권외이지만 투기·청약과열지구인 경우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제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제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제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제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제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제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남)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제당첨 제한
- ※ 제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제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의왕월암지구 A-1 및 A-3블록 최초공고(2024.11.08.) 기 당첨자(본인 및 세대원) 및 부적격당첨자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제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자산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치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등

1. 공급규모

- 의왕월암지구 A-1블록 674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6~29층 8개동 전용면적 55㎡ 111세대
- 의왕월암지구 A-3블록 642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6~29층 8개동 전용면적 55㎡ 77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합계		기계약	금회공급 공공분양	차후공급 장기임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A-1	055.0000O	55A	확장	55.52	26.0713	8.0894	39.4778	129.1585	43.6211	674	335	111	228			'27.11 예정		
		55B	확장	55.96	26.2779	8.1535	39.7907	130.1821	43.9668	404	335	111	228	29	1			
		합 계								270				29	-			
A-3	055.0000S			합 계						642	347	77	218			'28.04 예정		
		55A1	확장	55.57	26.7214	9.3950	44.0349	135.7213	41.2166	368	347	77	218	29	-			
		55A2	확장	55.56	26.7166	9.3933	44.0269	135.6968	41.2092	153				20	2			
		55B1	확장	55.97	26.9138	9.4626	44.3518	136.6982	41.5133	64				29	-			
		55B2	확장	55.76	26.8128	9.4271	44.1854	136.1853	41.3576	57							20	-

-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A-1BL은 건축공사일정 상 마이너스층현형, 공간확장형 및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선택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면적 차이로 인해 타입별 주택가격은 상이합니다.
-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동별 최고층수 차이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A, B, A1, A2, B1, B2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년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가스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 가정어린이집 및 기 계약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금회 배정 가능 세대수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6.07.15)	(‘27.03.15)		
A-1	055.0000O	55A	1층	기본형	440,620	44,062	44,062	44,062	253,434	55,000
				마이너스옵션						
			2층	기본형	445,190	44,519	44,519	44,519	256,633	55,000
				마이너스옵션						
			3층	기본형	449,760	44,976	44,976	44,976	259,832	55,000
				마이너스옵션						
		55B	4층	기본형	452,040	45,204	45,204	45,204	261,428	55,000
				마이너스옵션						
			5층~ 최상층	기본형	456,610	45,661	45,661	45,661	264,627	55,000
				마이너스옵션						
			55B	기본형	444,070	44,407	44,407	44,407	255,849	55,000
				마이너스옵션						
			2층	기본형	448,670	44,867	44,867	44,867	259,069	55,000
				마이너스옵션						
			3층	기본형	453,270	45,327	45,327	45,327	262,289	55,000
				마이너스옵션						
			4층	기본형	455,570	45,557	45,557	45,557	263,899	55,000
				마이너스옵션						
			5층~ 최상층	기본형	460,180	46,018	46,018	46,018	267,126	55,000
				마이너스옵션						
A-3	055.0000S	55A1	1층	기본형	443,340	44,334	44,334	44,334	255,338	55,000
				마이너스옵션	415,714	41,571	41,571	41,571	236,001	55,000
			2층	기본형	447,940	44,794	44,794	44,794	258,558	55,000
				마이너스옵션	420,314	42,031	42,031	42,031	239,221	55,000
			3층	기본형	452,530	45,253	45,253	45,253	261,771	55,000
				마이너스옵션	424,904	42,490	42,490	42,490	242,434	55,000
			4층	기본형	454,830	45,483	45,483	45,483	263,381	55,000
				마이너스옵션	427,204	42,720	42,720	42,720	244,044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59,430	45,943	45,943	45,943	266,601	55,000
				마이너스옵션	431,804	43,180	43,180	43,180	247,264	55,000
		55A2	1층	기본형	443,270	44,327	44,327	44,327	255,289	55,000
				마이너스옵션	416,081	41,608	41,608	41,608	236,257	55,000
			2층	기본형	447,860	44,786	44,786	44,786	258,502	55,000
				마이너스옵션	420,671	42,067	42,067	42,067	239,470	55,000
			3층	기본형	452,450	45,245	45,245	45,245	261,715	55,000
				마이너스옵션	425,261	42,526	42,526	42,526	242,683	55,000
			4층	기본형	454,750	45,475	45,475	45,475	263,325	55,000
				마이너스옵션	427,561	42,756	42,756	42,756	244,293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59,350	45,935	45,935	45,935	266,545	55,000
				마이너스옵션	432,161	43,216	43,216	43,216	247,513	55,000
		55B1	1층	기본형	445,770	44,577	44,577	44,577	257,039	55,000
				마이너스옵션	417,945	41,794	41,794	41,794	237,563	55,000
			2층	기본형	450,390	45,039	45,039	45,039	260,273	55,000
				마이너스옵션	422,565	42,256	42,256	42,256	240,797	55,000
			3층	기본형	455,010	45,501	45,501	45,501	263,507	55,000
				마이너스옵션	427,185	42,718	42,718	42,718	244,031	55,000
			4층	기본형	457,320	45,732	45,732	45,732	265,124	55,000
				마이너스옵션	429,495	42,949	42,949	42,949	245,648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61,940	46,194	46,194	46,194	268,358	55,000
				마이너스옵션	434,115	43,411	43,411	43,411	248,882	55,000
		55B2	1층	기본형	444,100	44,410	44,410	44,410	255,870	55,000
				마이너스옵션	416,813	41,681	41,681	41,681	236,770	55,000
			2층	기본형	448,700	44,870	44,870	44,870	259,090	55,000
				마이너스옵션	421,413	42,141	42,141	42,141	239,990	55,000
			3층	기본형	453,300	45,330	45,330	45,330	262,310	55,000
				마이너스옵션	426,013	42,601	42,601	42,601	243,210	55,000
			4층	기본형	455,600	45,560	45,560	45,560	263,920	55,000
				마이너스옵션	428,313	42,831	42,831	42,831	244,820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60,210	46,021	46,021	46,021	267,147	55,000
				마이너스옵션	432,923	43,292	43,292	43,292	248,047	55,000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A-1BL은 건축공사일정 상 마이너스옵션형, 공간확장형 및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선택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전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용자금이자 등은 수분양자 부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용자금(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안내 (A-3BL만 해당됨)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A-1BL은 마이너스옵션형 선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들, 확장형 발코니 출입문(PD), 실외기실 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욕실 목재공들, 욕실문틀 하부 실,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PL창호, 실외기실 그릴창호
② 바닥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포세린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스피커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⑤ 욕실	천정재(천정을 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젤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쿠팅,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가스배관 포함)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욕실등	전기배관 및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비상등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자동빨래건조대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소방감지기, 동작감지기, 에어컨냉매배관(기본형 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 계량기류, 보일러, 하향식피난구 등 소방관련시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안내

-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내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확장형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가구,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및 실외기실 우수배관은 설치 되나, 타일마감이 되지 않아 빗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 하도록 명기하고 보증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보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의 급수, 급탕 매립박스 및 일부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는 내부공사시 점검구설치 등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배기 팬 설치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하고 덤퍼와 연동되는 레인지후드(공용배기방식)를 시공하여야 합니다.(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약약을 징구(제출하여야)합니다.(현장계약 장소에 양식 비치, 전자계약체결시 별도 안내)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5.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 공간선택(무상) 안내

-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팍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uw-a1a3.co.kr)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공간선택(공간확장형)은 불가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A-1BL은 건축공사일정 상 공간확장형 선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주택형	타입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 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A-1	055.0000O	55A / 55B	침실2, 침실3 분리	침실2, 침실3 통합	기본형만 선택가능 (A 공간확장형 선택 불가)
A-3	055.0000S	55A1.2 / 55B1.2	침실2, 침실3 분리	침실2, 침실3 통합	기본형 또는 A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불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쿨탑 등

-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팍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는 아래 선택품목 1 ~ 4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시 유의사항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A-1BL은 건축공사일정 상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선택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 납부 조건]

분류	타입	유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금액단위:천원)					선택 시 유의사항
					합계	계약금 (계약)	중도금 1차 (26.07.15)	중도금 2차 (27.03.15)	잔금 (납부)	
A-1	55A	주방가구	1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1,108	110	110	110	778	5-1~2 선택시 선택불가
			2-1 냉장고장+주방가구(확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560	56	56	56	392	2-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2-2 냉장고장+키친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1,183	118	118	118	829	
			3 수납장	미설치	1,044	104	104	104	732	
			4 식기세척기 공간장	주방가구 하부장	선택시 무상 제공					* 식기세척기 제공이 아님
			5-1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상판, 벽체) +가위목 썬크수전+사각썬크볼(주방가구확장시)	상판 인조대리석(MMA) +벽체 도기질타일+일반 썬크수전+일반썬크볼	3,219	321	321	321	2,256	5-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2-1 선택 시 선택 가능
			5-2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상판, 벽체) +가위목 썬크수전+사각썬크볼	썬크수전+일반썬크볼	2,666	266	266	266	1,868	5-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기본형, 2-2 선택 시 선택 가능
			5-3 [주방특화] 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미설치	1,211	121	121	121	848	5-1~2 선택 시 선택 가능(단독 선택불가)
		가 구	6-1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1,562	156	156	156	1,094	6-1~3 중 하나만 선택 가능
			6-2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3장)+화장대	미설치	5,949	594	594	594	4,167	* 드레스룸(여닫이도어+시스템선반 →형 설치)
			6-3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4장)	미설치	5,719	571	571	571	4,006	
			7-1 침실3 불박이장	미설치	1,153	115	115	115	808	7-1만 선택 가능
			7-2 침실3 통합형 불박이장+화장대	미설치	선택불가					* 7-2는 2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가능
			8-1 복도팬트리	미설치	선택불가					5-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8 선택 시 선택 불가 * 8-1 선택시 여닫이도어, 시스템선반 →자형 설치
		거실 인테리어	9-1 복도팬트리	미설치	선택불가					5-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8-1 선택시 여닫이도어, 시스템선반 →자형 설치
			10-2 신발장+복도팬트리(확장)	현관팬트리	선택불가					* 10-2는 2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가능 * 8-2 선택시 신발장, 여닫이도어, 시스템선반 →자형 설치
			11 현관 중문	미설치	1,497	149	149	149	1,050	
			12 거실 아트월 광목타일(600*1200)	기본타일(800*400)	418	41	41	41	295	
			13 [거실특화] 거실 벽체 등 시트판넬 마감(아트월 맞은편, 창문벽, 복도벽 등)	실크벽지	2,566	256	256	256	1,798	
			14-1 [조명특화] 거실등(중앙작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신발장 하부, 엣지등(거실, 침실1), 아트월 포인트]	거실등(중앙작부등) * 디밍 제어 가능	2,616	261	261	261	1,833	10-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10-1 선택시 거실등(중앙작부등) 및 침실등 디밍 색온도 제어 가능
			14-2 [조명특화] 거실등(다운라이트)+간접조명[우물천장, 신발장 하부, 엣지등(거실, 침실1), 아트월 포인트]		3,068	306	306	306	2,150	* 10-2 선택시 거실등(다운라이트) 디밍 제어, 침실등 디밍 색온도 제어 가능
	주방가전	시스템 에어컨	15-1 가스1구+인덕션2구	가스룩탑 3구형	630	63	63	63	441	15-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15-2 인덕션3구		590	59	59	59	413	
		욕실자재	16-1 거실+침실1	냉매배관(거실+침실1)	3,940	394	394	394	2,758	16-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16-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670	667	667	667	4,669	* 16-3은 2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가능
			16-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통합형)		선택불가					
			17-1 공용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바닥재	17-2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수로가림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17-3 기능성 롱카펫(6mm)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A-3	55B	주방가구	1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1,108	110	110	110	778	5-1~2 선택시 선택불가
			2-1 냉장고장+주방가구(확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560	56	56	56	392	2-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2-2 냉장고장+키친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1,183	118	118	118	829	
			3 수납장	미설치	1,044	104	104	104	732	
			4 식기세척기 공간장	주방가구 하부장	선택시 무상 제공					* 식기세척기 제공이 아님
			5-1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상판, 벽체) +가위목 썬크수전+사각썬크볼(주방가구확장시)	상판 인조대리석(MMA) +벽체 도기질타일+일반 썬크수전+일반썬크볼	3,601	360	360	360	2,521	5-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2-1 선택 시 선택 가능
			5-2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상판, 벽체) +가위목 썬크수전+사각썬크볼	썬크수전+일반썬크볼	3,049	304	304	304	2,137	5-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기본형, 2-2 선택 시 선택 가능
			5-3 [주방특화] 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미설치	1,211	121	121	121	848	5-1~2 선택 시 선택 가능(단독 선택불가)
		가 구	6-1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1,580	158	158	158	1,106	6-1~3 중 하나만 선택 가능
			6-2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3장)+화장대	미설치	5,966	596	596	596	4,178	* 드레스룸(여닫이도어 +시스템선반 →형 설치)
			6-3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4장)	미설치	5,737	573	573	573	4,018	
			7-1 침실3 불박이장	미설치	1,153	115	115	115	808	7-1만 선택 가능
			7-2 침실3 통합형 불박이장+화장대	미설치	선택불가					* 7-2는 2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가능
			8-1 복도팬트리	미설치	선택불가					
		거실 인테리어	9-1 복도팬트리	미설치	1,497	149	149	149	1,050	
			10 거실 아트월 광목타일(600*1200)	기본타일(800*400)	440	44	44	44	308	
			11 [거실특화] 거실 벽체 등 시트판넬 마감(아트월 맞은편, 창문벽, 복도벽 등)	실크벽지	2,566	256	256	256	1,798	
			12-1 [조명특화] 거실등(중앙작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신발장 하부, 엣지등(거실, 침실1), 아트월 포인트]	거실등(중앙작부등) * 디밍 제어 가능	2,649	264	264	264	1,857	10-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10-1 선택시 거실등(중앙작부등) 및 침실등 디밍 색온도 제어 가능
			12-2 [조명특화] 거실등(다운라이트)+간접조명[우물천장, 신발장 하부, 엣지등(거실, 침실1), 아트월 포인트]		3,242	324	324	324	2,270	* 10-2 선택시 거실등(다운라이트) 디밍 제어, 침실등 디밍 색온도 제어 가능
			13-1 가스1구+인덕션2구	가스룩탑 3구형	630	63	63	63	441	15-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13-2 인덕션3구		590	59	59	59	413	
	주방가전	시스템 에어컨	14-1 거실+침실1	냉매배관(거실+침실1)	3,940	394	394	394	2,758	16-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14-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670	667	667	667	4,669	* 16-3은 2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가능
			14-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통합형)		선택불가					
		욕실자재	15-1 공용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15-2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수로가림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16-1 거실+침실1	냉매배관(거실+침실1)	3,940	394	394	394	2,758	16-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16-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670	667	667	667	4,669	* 16-3은 2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가능		
16-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통합형)			선택불가							
바닥재	17-1 기능성 롱카펫(6mm)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17-2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수로가림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A-3	55A 1,2	주방가구	1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1,108	110	110	110	778	5-1~2 선택시 선택불가
			2-1 냉장고장+주방가구(확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560	56	56	56	392	2-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2-2 냉장고장+키친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1,183	118	118	118	829	
			3 수납장	미설치	1,044	104	104	104	732	
			4 식기세척기 공간장	주방가구 하부장	선택시 무상 제공					* 식기세척기 제공이 아님
			5-1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상판, 벽체) +가위목 썬크수전+사각썬크볼(주방가구확장시)	상판 인조대리석(MMA) +벽체 도기질타일+일반 썬크수전+일반썬크볼	3,219	321	321	321	2,256	5-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2-1 선택 시 선택 가능
			5-2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상판, 벽체) +가위목 썬크수전+사각썬크볼	썬크수전+일반썬크볼	2,666	266	266	266	1,868	5-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기본형, 2-2 선택 시 선택 가능
			5-3 [주방특화] 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미설치	1,211	121	121	121	848	5-1~2 선택 시 선택 가능(단독 선택불가)
		가 구	6-1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1,562	156	156	156	1,094	6-1~3 중 하나만 선택 가능
			6-2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3장)+화장대	미설치	5,949	594	594	594	4,167	* 드레스룸(여닫이도어 +시스템선반 →형 설치)
			6-3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4장)	미설치	5,719	571	571	571	4,006	
			7-1 침실3 불박이장	미설치	1,153	115	115	115	808	7-1만 선택 가능
			7-2 침실3 통합형 불박이장+화장대	미설치	2,589	258	258	258	1,815	* 7-2는 2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가능
			8-1 복도팬트리	미설치	1,425	142	142	142	999	8-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8 선택 시 선택 불가 * 8-1 선택시 여닫이도어, 시스템선반 →자형 설치
		거실 인테리어	9-2 신발장+복도팬트리(확장)	현관팬트리	1,837	183	183	183	1,288	* 9-2 선택시 신발장, 여닫이도어, 시스템선반 →자형 설치
			10 현관 중문	미설치	1,475	147	147	147	1,034	

블록	타입	유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금액단위:천원)					선택 시 유의사항
					합계	계약금 (계좌입)	중도금 1차 (26.07.15)	중도금 2차 (27.03.15)	잔금 (입주)	
55B 1,2	거실 인테리어	거실 인테리어	11 거실 아트월 광목타일(600*1200)	기본타일(800*400)	440	44	44	44	308	
			12 [거실특화] 거실 벽체 등 시트판넬 마감(아트월 맞은편, 창문벽, 복도벽 등)	실크벽지	2,566	256	256	256	1,798	
			13-1 [조명특화] 거실등(중앙직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신발장 하부, 옛지등(거실, 침실1), 아트월 포인트]	거실등(중앙직부등) ※ 디밍 제어 가능	2,616	261	261	261	1,833	13-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13-1 선택시 거실등(중앙직부등) 및 침실등 디밍-색온도 제어 가능 ※ 13-2 선택시 거실등(다운라이트) 디밍 제어, 침실등 디밍-색온도 제어 가능
			13-2 [조명특화] 거실등(다운라이트)+간접조명[우물천장, 신발장 하부, 옛지등(거실, 침실1), 아트월 포인트]		3,068	306	306	306	2,150	
		주방가전	14-1 가스1구+인덕션2구	가스룩탑 3구형	630	63	63	63	441	14-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14-2 인덕션3구		590	59	59	59	413	
		시스템 에어컨	15-1 거실+침실1	냉매배관(거실+침실1)	3,940	394	394	394	2,758	15-1~3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15-3은 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가능
			15-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670	667	667	667	4,669	
			15-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통합형)		5,530	553	553	553	3,871	
		욕실자재	16-1 공용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16-2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수로가림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주방가구	바닥재	17 기능성 톱카펫(6mm)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18 아일랜드시탁(MMA)	미설치	1,108	110	110	110	778	18-2 선택시 선택불가
		주방가구	2-2 냉장고장+키친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183	118	118	118	829	
			4 식기세척기 공간장	식기세척기 하부장	선택시 무상 제공					※ 식기세척기 제공이 아님
		가 구	5-2 엔지니어드스톤(주방가구상판, 벽체)+거위목 씽크수전+사각씽크볼	상판 인조대리석(MMA)+벽체 도기질타일+일반 씽크수전+일반씽크볼	2,504	250	250	250	1,754	
			6-3 [주방특화] 아일랜드시탁(엔지니어드스톤)	미설치	1,211	121	121	121	848	6-2 선택 시 선택 가능(단독 선택불가)
		가 구	6-1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1,725	172	172	172	1,209	6-1~3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드레스룸(여닫이도어+시스템선반 ㄱ형 설치) 7-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7-2는 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가능
			6-2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3장)+화장대	미설치	6,190	619	619	619	4,333	
			6-3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4장)	미설치	5,960	596	596	596	4,172	
			7-1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153	115	115	115	808	
			7-2 침실2 통합형 불박이장+화장대	미설치	2,589	258	258	258	1,815	
			9-1 침실3 복도팬트리+드레스룸2(공간제공)	침실3	1,752	175	175	175	1,227	9-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불가 ※ 9-1 선택시 복도팬트리(시스템선반 ㄱ자형), 드레스룸(여닫이도어) 설치 ※ 9-2 선택시 복도팬트리(시스템선반 ㄱ자형), 드레스룸(여닫이도어+시스템선반 ㄷ자형) 설치
			9-2 침실3 복도팬트리+드레스룸2(시스템선반)	침실3	3,432	343	343	343	2,403	
		거실 인테리어	10 현관 중문	미설치	1,475	147	147	147	1,034	
			11 거실 아트월 광목타일(600*1200)	기본타일(800*400)	462	46	46	46	324	
			12 [거실특화] 거실 벽체 등 시트판넬 마감(아트월 맞은편, 창문벽, 복도벽 등)	실크벽지	2,566	256	256	256	1,798	
			13-1 [조명특화] 거실등(중앙직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신발장 하부, 옛지등(거실, 침실1), 아트월 포인트]	거실등(중앙직부등) ※ 디밍 제어 가능	2,628	262	262	262	1,842	13-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 13-1 선택시 거실등(중앙직부등) 및 침실등 디밍-색온도 제어 가능 ※ 13-2 선택시 거실등(다운라이트) 디밍 제어, 침실등 디밍-색온도 제어 가능
			13-2 [조명특화] 거실등(다운라이트)+간접조명[우물천장, 신발장 하부, 옛지등(거실, 침실1), 아트월 포인트]		3,242	324	324	324	2,270	
		주방가전	14-1 가스1구+인덕션2구	가스룩탑 3구형	630	63	63	63	441	14-1~2 중 하나만 선택 가능
			14-2 인덕션3구		590	59	59	59	413	
		시스템 에어컨	15-1 거실+침실1	냉매배관(거실+침실1)	3,940	394	394	394	2,758	15-1~4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15-3은 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 가능 ※ 15-4는 15-1, 15-2 선택 시 선택 가능
			15-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670	667	667	667	4,669	
			15-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통합형)		5,530	553	553	553	3,871	
			15-4 거실+침실1+침실2		5,170	517	517	517	3,619	
		욕실자재	16-1 공용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16-2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수로가림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바닥재	17 기능성 톱카펫(6mm)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천원)				실별 구분 가격						
블록	주택형	타입별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드레스룸
A-1	055.00000	55A	기본공사비(A)	76,864	18,347	16,870	12,219	13,590	15,488	349
			확장공사비(B)	83,481	18,959	17,564	12,730	14,126	19,129	973
			계약자부담액(B-A)	6,617	611	694	511	536	3,641	624
		55B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기본공사비(A)	78,879	21,007	24,659	11,698	13,008	2,554	5,953
			확장공사비(B)	85,607	21,622	25,469	12,173	13,504	6,074	6,764
A-3	055.00000S	55A1	계약자부담액(B-A)	6,399	644	721	557	610	3,241	625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439	548	613	473	518	2,755	532
		55A2	기본공사비(A)	80,146	19,048	17,519	12,667	14,068	16,243	601
			확장공사비(B)	86,569	19,691	18,239	13,223	14,677	19,512	1,226
			계약자부담액(B-A)	6,423	643	720	556	609	3,270	625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459	546	612	473	517	2,779	532
		55B1	기본공사비(A)	83,011	10,838	25,784	16,003	12,795	17,591	
			확장공사비(B)	88,079	11,664	27,324	17,001	13,598	18,492	
			계약자부담액(B-A)	5,068	826	1,540	998	804	901	
		55B2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4,308	702	1,309	848	683	766	
			기본공사비(A)	83,008	10,837	25,783	16,003	12,794	17,590	
			확장공사비(B)	88,103	11,664	27,324	17,001	13,598	18,516	
			계약자부담액(B-A)	5,096	827	1,541	998	804	926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4,331	703	1,310	849	684	787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액 계'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액 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청소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추가선택품목 납부 조건]

[단위 : 천원]

분류	주택형	타입별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26.07.15)	중도금 2차 (‘27.03.15)	잔금 (입주시)
A-1	055.0000O	55A	기본형	6,617	1,000	1,000	1,000	3,617
			마이너스옵션	선택불가				
		55B	기본형	6,728	1,000	1,000	1,000	3,728
			마이너스옵션	선택불가				
A-3	055.0000S	55A1	기본형	6,399	1,000	1,000	1,000	3,399
			마이너스옵션	5,439	1,000	1,000	1,000	2,439
		55A2	기본형	6,423	1,000	1,000	1,000	3,423
			마이너스옵션	5,459	1,000	1,000	1,000	2,459
		55B1	기본형	5,068	1,000	1,000	1,000	2,068
			마이너스옵션	4,308	1,000	1,000	1,000	1,308
		55B2	기본형	5,096	1,000	1,000	1,000	2,096
			마이너스옵션	4,331	1,000	1,000	1,000	1,331

6.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입주 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 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54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환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보증)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각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주택도시보증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을,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일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의왕월암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5.22.)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왕시)	100%	· 공고일 현재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5.22 이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 거주 ('24.05.22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공급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5.06.13.)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닐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닐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닐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절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 **검토대상**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당첨자 서류 접수 후 사회정보시스템에 조사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총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3> 총자산보유기준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보유판정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 (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54,000천원 이하	건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토지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율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③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⑤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뉴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① 부동산(건물+토지)			<표3> 총자산보유기준 참고
② 금융자산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③ 기타자산	⑤를 차감한 금액이	⑤를 차감한 금액이	
④ 자동차	388,000천원 이하	421,000천원 이하	
⑤ 부채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4. 소득 판정 기준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7> 조희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366,906원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원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우선 공급) 배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043,718원	6,004,662	6,321,734	6,813,160	7,304,587	7,796,01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764,250원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205,312원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추첨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925,843원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366,906원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원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02,03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5,764,250원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6,484,781원	7,720,279	8,127,943	8,759,777	9,391,612	10,023,44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205,312원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7,925,843원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8,646,374원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366,906원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10,087,437원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10,807,968원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11,528,499원	13,724,941	14,449,677	15,572,938	16,696,198	17,819,45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10%	15,131,155원	18,013,985	18,965,201	20,439,481	21,913,760	23,388,04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20%	15,851,686원	18,871,794	19,868,306	21,412,789	22,957,273	24,501,756

•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않음.
예비신혼부부	2페이지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위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 단, 세대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모혼처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모혼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후 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 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7> 조희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원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원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지인 투기·청약과열지구인 경우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6년 05월 22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 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예비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원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원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의지역은 6개월, 수도권외이지만 투기·청약과열지구인 경우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원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의지역은 6개월, 수도권외이지만 투기·청약과열지구인 경우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5. 입주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를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의왕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우선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초과 11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거주(0점) 선택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거주(0점) 선택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가구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043,718원	6,004,662	6,321,734	6,813,160	7,304,587	7,796,01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764,250원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205,312원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925,843원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13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366,906원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원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를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의왕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일반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9> 일반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3	· 태아(임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④ 0명	0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없음(0점) 선택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해당없음	0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거주(0점) 선택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거주(0점) 선택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임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태아)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점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산 정 예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V. 신청시 확인사항”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없으며 해당 가점은 0점.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30세가 되는 앞는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합니다.

■ 3단계 추천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기타지역(의왕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동호추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신청자격별·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천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당첨자의 입주자 선정일(2024.11.29.)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에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 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호출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 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방법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5.06.04(수) 10:00 ~ 06.05(목) 16: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에도 청약 가능함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5.06.05(목) 오후 6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방법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연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2025.06.04. 10:00 ~ 06.05. 16: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의왕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의왕시)”, 과거 1년 미만 의왕시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순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 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가입기간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신혼부부 특별공급용)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I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선택사항품목 결정, 계약체결 등

1. 추첨(공공분양 등 · 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5년 06월 13일(금) 11:0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 수원 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연락처 : 031-8077-7989)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택품목 결정 (당첨자)	계약체결(당첨자)	
			전자계약	현장계약
2025.06.13(금) 14:00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25.06.21(토)~06.23(월) 10:00~17:00	2025.09.23(화)~09.24(수) 10:00~17:00	2025.09.29(월) 10:00~16:00	2025.09.30(화) 10:00~17:00
	LH 수원 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수원 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첨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 청약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5.06.21.~2025.06.23.)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②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④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공개)		선택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공개)	필수	본인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⑦ 재직증명서	선택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선택	본인 및 세대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⑩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태어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포함
⑪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선택	세대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⑫ 한부모가족증명서	선택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⑭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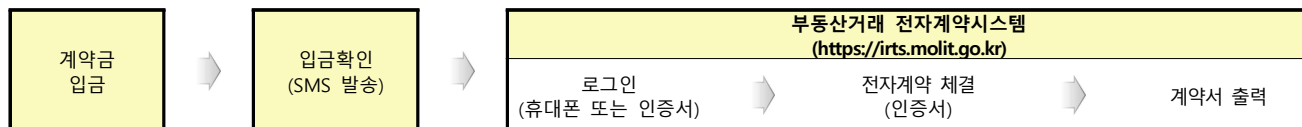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현장수납 불가) * 주택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알려드려요-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까지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향후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계약서 재작성 필요)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보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황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 계약금 포함)을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 (031-8077-7989)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단,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 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자후불제 대출안내]** (중도금 대출 협약체결에 따라 대출이 실행 될 경우 이자 납부 방법 안내입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계약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공사가 대납하되, 공사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입주자가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 시 우리 공사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대납 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중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미납금액에 연체이자(연행 8.5%, 변동 가능)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원할 시, 주택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정 등 세부 계획은 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연행 8.5%, 변동 가능)이 가산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 시 발생하는 제부담금(인지대 및 주택보증수수료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이 때 주택도시보증기금 융자금은 동시에 수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곰을 경사로(기성품)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방	작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거실	월패드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전걸이 높이조정, 낮낮이조정 세면기		기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기** : 최초 현장계약체결기간 (2025.09.30.)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49호, 2023.12.27.)로 승인 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당해 지구 북측으로 의왕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의왕ICD, 군포첨단산업단지,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등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음
- 당해 지구 북측으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의왕장안지구가 위치하고 있음
- 당해 지구 내 월암천, 서측으로 왕송호수, 북측으로 덕성산이 위치하고 있음
- 당해 지구 북측으로 영동고속도로, 남측으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서측으로 평택파주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 당해 지구 인근 지하철 1호선(경부선)이 통과하고 있음
- 당해 지구와 연결한 덕영대로 및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변 일부에 방음벽(3.5m ~ 15.0m)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하수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및 하수처리시설(지하화) 1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 내 홍수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이 1개소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 내 일반분양, 공공분양,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 내 초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설립 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야 함
- 당해 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청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계기관(의왕시 등)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종교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위치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북측으로 법정보호종(맹공이) 대체식식지 1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 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공통>

- 청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위치하여 입주 후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건축공사 등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인근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인근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시설물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단지 서측에 덕영대로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공사완료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공원·녹지·도로와 인접해 있는 주거동은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인근에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공급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유관기관 설치계획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에는 한전 지중화용 지상기 및 노상시설물(가로등, 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A-1블록>

- 본 단지와 연결하여 경관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조성 계획 및 완료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초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개교일정 등은 사전에 교육청에 문의하여야 함

<A-3블록>

- 환경영향평가가 소음저감대책에 따라 본 단지 서측 덕영대로 변 일부에 방음벽(13.0m)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와 연결하여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조성 계획 및 완료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북측에 역사공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동측에 초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개교일정 등은 사전에 교육청에 문의하여야 함

■ 단지 내부여건

<A-1블록>

- 본 아파트 단지는 신촌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과 행복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의 원아모집 및 운영 관련사항은 추후 관계법령 및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1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천장고)는 2.7m이며 택배차량은 지하1층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2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천장고)는 2.3m로 계획되어 높이 2.3m 이하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 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105동, 106동, 107동 인근에 총 41대(급속충전기 8대, 완속충전기 33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지하1층에 394대, 지하2층에 429대로 총 823대이며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3대입니다. 총 주차대수 826대 중 26대는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주차장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함)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지하1층~지하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마다 위치가 다르게 설치됩니다. 또한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세대별 단독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온·습도에 민감한 물품은 보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의 환기·결로방지를 위한 장비가동(팬,제습기)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및 펌프실, 환풍기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필로티, 지상1층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창호 외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연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은 각 동 주변에 설치될 예정이고,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 세대는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통해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01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위치하여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및 108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102동 : 작은도서관, 종합보육센터 등, 108동 : 피트니스센터, 키즈스테이션 등)이 위치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온가족카페, 스마트멀티룸 등)에 내부 시설물(비품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 동 번호, BI(Brand Identity)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펌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등 이미지는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설설치 여부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로부터의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는 2개소(지하1층 진입 1개소, 지하2층 진입 1개소)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 주변 지상주차장(3대)은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삭제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가까이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적용하여 배출량 및 처리비용을 관리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 동별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필로티,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울타리 및 담장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의 조정 식재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각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 주차장 환기팬, 유인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 공기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육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풍기 설치되며,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지하주차장 및 지상층 환기구 주변에 소음, 진동, 먼지, 바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기가 지하주차장 2개소와 옥상 4개소(101동, 104동, 105동, 106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에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5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106동과 107동사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는 101동 및 문주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신속한 주차유도와 주차가능공간 및 차량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한 AI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스마트우편함은 통합형(무인택배함 통합설치)으로 각 동 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 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냉풍,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환기설비 및 제습기가 설치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전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3동, 105동, 106동, 108동 옥탑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야간에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열교환식 공동현관기(로비폰)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열교환식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과 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검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관리사항입니다.

<A-3별록>

- 본 아파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과 행복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의 원아모집 및 운영 관련사항은 추후 관계법령 및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천장고)는 2.7m이며 택배차량은 지하1층 및 지하2층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3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천장고)는 2.3m로 계획되어 높이 2.3m 이하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 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304동, 305동, 306동 인근에 총40대(급속충전기 8대, 완속충전기 32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지하1층에 95대, 지하2층에 393대, 지하3층에 295대로 총 783대이며,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4대입니다. 총 주차대수 787대 중 25대는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주차장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함)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전체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동마다 연결된 지하층이 상이합니다.(지하1층 : 305동, 306동, 307동, 지하2층 : 301동 ~ 308동 전체, 지하3층 : 301동, 302동, 303동, 304동, 308동)
- 계절창고는 지하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마다 위치가 다르게 설치됩니다. 또한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세대별 단독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온·습도에 민감한 물품은 보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의 환기·결로방지를 위한 장비가동(팬,제습기)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및 펌프실, 환풍기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필로티, 지상1층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창호 외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연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은 각 동 주변에 설치될 예정이고,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 세대는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통해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01동, 302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위치하여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02동, 303동 하부에 피트니스센터가 위치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6동 및 307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종합보육센터 등), 307동 및 308동 사이에 주민카페가 위치하여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주민카페, 스마트멀티룸 등)에 내부 시설물(비품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 동 번호, BI(Brand Identity)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펌플링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설설치 여부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로부터의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는 2개소(지하1층 진입 1개소, 지하2층 진입 1개소)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 주변 지상주차장(4대)은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3동 전면 어린이놀이터-1 우측 생활자원보관소는 상가(근린생활시설)용입니다.
- 본 단지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적용하여 배출량 및 처리비용을 관리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 동별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필로티,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울타리 및 담장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의 조경 식재 및 시설물(어린이 놀이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지하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각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언팬, 주차장 환기팬, 유인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 공기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지하주차장 및 지상층 환기구 주변에 소음진동, 먼지, 바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기가 지하주차장 2개소와 옥상 3개소(301동, 303동, 306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06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지하3층 304동 1호 세대측)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는 302동 및 304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천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신속한 주차유도와 주차가능공간 및 차량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한 AI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스마트우편함은 단독형(무인택배함 : 각 동 지하 별도설치)으로 각 동 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상층 및 주위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냉풍,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환기설비 및 제습기가 설치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전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야간에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열굴인식 공동현관기(로비폰)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열굴인식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과 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관리사항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A-1블록>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화장실,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경량벽체는 칸막이 구조로, 인접한 거실 또는 침실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 욕실에 AD/PD가 위치하여 욕실 및 인접한 실에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세탁실) 내에 우수선출통이 설치되어 강우 시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는 봉투바름(테두리바름)으로 시공되어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워크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실, 욕실, 주방 등)
- 가구 현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부속품은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 불가 혹은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렛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장류(오픈가구를 포함한 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실외기실은 여단이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동절기(혹한기)에 단전 시, 장시간 휴지 시 보일러 동결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며, 평상시 실외기 외기통풍구 덮개 밀폐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일부 세대를 제외한 실외기실 바닥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가 설치된 직하층에는 피난상황 발생 시 피난사다리 전개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는 층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필로티가 있는 저층부(3층)에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경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욕탁,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뭇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TV, 벽걸이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주방가구(옵션 아일랜드식탁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옵션 중 아일랜드식탁은 고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식탁 및 아일랜드식탁 조명기구: 보편적으로 식탁 및 아일랜드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귀, 수급·생산불능 및 제조회사의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상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상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거실 시각경보기 등은 전상품임)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가스콕담 주위에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주방가구 상부 및 하부장에 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홀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우수용,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드레인 및 배관의 위치와 개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당해 지구는 개별난방지구로서 세대별 개별 가스보일러(난방 및 급탕 겸용)를 통해 온수를 생산, 공급하는 방식으로 급탕(난방) 사용 시 또는 세대 급탕 동시 사용 시(욕실, 주방, 세탁기) 원하는 사용 급탕(난방)온수 도달에 다소간의 시간이 지연되거나, 급탕온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 배관은 거실,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며 가전제품 설치시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주방 등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관련 배관이 노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공용배기 방식이 적용되며, 레인지후드에는 덤퍼만 설치됩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타입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배기장치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홀이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AL창호,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상부 등에 냉·난방 실외기가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용시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온·냉풍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일반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전용용 콘센트만 설치됩니다.
- 세대내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장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 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 홈트윈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으로 방범서비스, (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2,3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 시스템 연동)를 제공합니다.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됩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현관팬트리(기본형 기준)에 설치, 세대분전반은 침실2 또는 침실3 도어 후면 벽체에 매립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 발코니 동작감지기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단, 실외기실(대피공간)에는 벽부형 조명이 설치됨)
- 세탁실 천장에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며 사용 시 주변 시설물(세탁기, 건조기 등)과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루버창을 열지 않고 실외기 가동 시 에어컨 기능이상 및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수 있어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진동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시스템 에어컨(옵션)은 무선 리모콘을 통해 작동되며 세대 내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쿡탑(옵션품목포함)과 가스차단밸브 및 배관사이 공간이 협소해서 대용량 냄비사용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에 설치되는 악세사리(조리기구 걸이대, 컵 선반 등)는 전기 콘센트 및 도시가스 밸브의 간섭으로 인해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환기시스템 자동운전 시 공기질 측정을 위한 센서는 침실1에 설치됩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3붙록>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화장실,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경량벽체는 칸막이 구조로, 인접한 거실 또는 침실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 욕실에 AD/PD가 위치하여 욕실 및 인접한 실에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세탁실) 내에 우수선출동이 설치되어 강우 시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는 봉투바름(테두리바름)으로 시공되어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워크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실, 욕실, 주방 등)
- 가구 현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부속품은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 불가 혹은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렛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장류(웍선가구를 포함한 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실외기실은 여단이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동절기(혹한기)에 단전 시, 장시간 휴지 시 보일러 동결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며, 평상 시 실외기 외기통풍구 댐퍼 밀폐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일부 세대를 제외한 실외기실 바닥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가 설치된 직하층에는 피난상황 발생 시 피난사다리 전개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는 층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필로티가 있는 저층부(3층)에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경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뒀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TV, 벽걸이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주방가구(웍선 아일랜드식탁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웍선 중 아일랜드식탁은 고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식탁 및 아일랜드식탁 조명기구들은 보편적으로 식탁 및 아일랜드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모델하우스,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귀, 수급·생산불능 및 제조회사의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σι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σι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거실 시각경보기 등은 전σι품임)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가스콕담 주위에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주방가구 상부 및 하부장에 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홀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우수용,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드레인 및 배관의 위치와 개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당해 지구는 개별난방지구로서 세대별 개별 가스보일러(난방 및 급탕 겸용)를 통해 온수를 생산, 공급하는 방식으로 급탕(난방) 사용 시 또는 세대 급탕 동시 사용 시(욕실,주방,세탁기) 원하는 사용 급탕(난방)온수 도달에 다소간의 시간이 지연되거나, 급탕온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 배관은 거실,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며 가전제품 설치시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주방등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관련 배관이 노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공용배기 방식이 적용되며, 레인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됩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타입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배기장치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절연설비가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홀이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ㄹ창호,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상부 등에 냉·난방 실외기가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용시 인근 등에 소음 및 진동, 온·냉풍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일반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전용용 콘센트만 설치됩니다.
- 세대에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장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 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위 1개소에 설치됩니다. (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 홈네트워킹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으로 방범서비스, (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2,3 네트워크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연동)를 제공합니다.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됩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현관팬트리(기본형 기준)에 설치, 세대분전반은 침실2 또는 침실3 도어 후면 벽체에 매립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 발코니 동작감지기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단, 실외기실(대피공간)에는 벽부형 조명이 설치됨)
- 세탁실 천장에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며 사용 시 주변 시설물(세탁기, 건조기 등)과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루버창을 열지 않고 실외기 가동 시 에어컨 기능이상 및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수 있어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진동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시스템 에어컨(오피션)은 무선 리모콘을 통해 작동되며 세대 내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쿡탑(오피선포복포함)과 가스차단밸브 및 배관사이 공간이 협소해서 대용량 냄비사용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에 설치되는 악세사리(조리기구 걸이대, 컵 선반 등)는 전기 콘센트 및 도시가스 밸브의 간섭으로 인해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환기시스템 자동운전 시 공기질 측정을 위한 센서는 침실1에 설치됩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개교 계획 및 시기

학교	위치	개교시기	해당교육청	비고
초등학교	초1	'27.9월(예정)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 의왕월암 A-1BL 및 A-3BL에서 발생하는 중학생은 의왕부곡중학교 중측 또는 의왕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중학교 설립을 통해 배치가 가능하나, 의왕 부곡중학교 중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칭)초평중학교 신설 사업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고등학교는 안양권학군에 배치가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사전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지구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교육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고, 학교 개교시기 및 학생 배치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본 지구 내 학교 개교가 지연될 경우 입주 후 사업지구 인근 학교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의 개교 예정 시기는 기상상황, 공사추진일정,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사항 (공동)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이며,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단지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입주일(잔금 완납하여 열쇠를 수령하여 입주절차를 완료한 날)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4.11.08.) 참조]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4.11.08.) 참조]

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4.11.08.) 참조]

8.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4.11.08.) 참조]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사업자등록번호)
A-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35-82-14276)	주식회사 케이알산업(126-81-05325) 우경건설 주식회사(129-81-27691) 성진종합건설(합)(224-81-11548)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337-87-00086)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105-81-32709)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106-81-31872) 주식회사 건창이엔이(542-86-01429)
A-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35-82-14276)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609-81-04684)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220-81-50215) 신화건설 주식회사(226-81-07962)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337-87-00086)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105-81-32709)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106-81-31872) 주식회사 건창이엔이(542-86-01429)

10. 견본주택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안내

의왕월암 A-1 및 A-3블록 주택전시관 [2025.05.25. 17시 이후 운영종료]



- 위치안내 :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 오시는길 : 롯데백화점 동탄점 맞은편 LH 동탄 주택전시관
 - 열차 : 동탄역 하차 후 도보 8분
 - 버스 : 포스코더샵 · 롯데캐슬에서 하차
 - (일반버스) 71, 99
 - (마을버스) 17, 19-1, 19-3, 709-1, 81
 - (광역 · 직행) 6001, 6003, 6008, 7200, 8302, M4130, M4434
- 운영기간 : (관람) 2025.05.24(토) ~ 05.25(일)
 - ※ 주말(토·일요일) 운영
- 운영시간 : 10:00~17:00(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사이버 모델하우스 (PC · 모바일)

분양문의

■ 주 소 : www.lhuw-a1a3.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의왕월암 A-1 및 A-3블록 주택전시관 : 031-8077-7989 (10:00 ~ 17:00)

2025.05.22.



경기남부지역본부